

공 시 송 달 공 고

「우편법 제19조」에 의거 부과한 후납우편료를 체납한 자에게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“압류통지서”를 우편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「행정절차법 제14조4항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7년 10월 27일

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

1. 공고사유 : “압류 통지서”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

2. 관련법규

가.우편법제24조(체납요금 등의 징수방법) 및 국세징수법제3장(체납처분)

나.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(송달)

3. 공고기간 : 2017.10.27. ~ 2017.11.10.(15일)

4. 공고대상자 및 압류통지 내역

성 명	주 소	압류일자	압류재산	체납액(원)	반송사유
우영*	전남 순천시 향매로 **	2017. 10. 13.	제3채무자 채권압류	42,930	폐문부재

5. 공고내용 : 후납우편료 체납액 납부 독촉 및 압류 예고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관련법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합니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☎(062)600-4759 로 문의 바랍니다.

2017년 10월 27일

전 남 지 방 우 정 청 장